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40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4월 16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4.04.16. ~ 2024.04.29.(14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오정훈	1971.00.28.	0178200274100002875	₩30,564,000	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 10 길
2	주식회사 엘제이스트	160111-0382799	0178200274100003298	₩2,852,000	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77, 지하 1 층
3	박병주	1967.00.10.	0178230274100004698	₩988,400	전북 익산시 고봉로 34 길
4	이무일	1985.00.29.	0178230274100002942	₩4,042,500	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66 번길
5	김인선	1965.00.20.	0178230274100005063	₩3,583,100	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
6	권오현	1972.00.30.	0178200274100005918	₩31,860,000	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 3 길
7	(합자) 로템피씨넷	200113-0006164	0178200274100002877 0178200274100002878	₩42,480,000 ₩42,480,000	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52-1, 1, 2 층
8	이은순	1965.00.30.	0178200274100005915	₩31,860,000	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 길
9	공정식	1971.00.07.	0178230274100000675	₩3,687,120	충남 아산시 시민로
10	김영욱	1971.00.07.	0178200274100004289	₩4,484,760	충북 괴산군 탑촌들 1 길
11	김영선	1981.00.04.	0178200274100004914	₩31,860,000	충남 보령시 충서로
12	전대식	1965.00.11.	0178200274100005919	₩31,860,000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
13	정흥우	1979.00.16.	0178200274100004923	₩19,116,000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1 번길
14	합자회사 새 로운카인코더	160113-0018803	0178200274100001209	₩29,736,000	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2 번길 34, 지층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5	김대기	1983.00.05.	0178200274100003763	₩19,116,600	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21 번길
16	김은철	1982.00.26.	0178200274100004926	₩31,860,000	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 1 길
17	김철	1957.00.09.	0178200274100005922	₩31,860,000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 94 번길
18	조종렬	1960.00.10.	0178200274100005909	₩31,860,000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 가길
19	강연희	1966.00.03.	0178200274100004930	₩19,116,000	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분로
20	이상원	1970.00.25.	0178200274100005928	₩22,302,000	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4 길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, 6층 ☎ 042-347-2103, 2105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